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위너스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5. 10.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를 위한 내부적 투자판단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너스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삼자의 요청을 추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매매*하는 등 내부적 투자판단에 소홀히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 2019.2월 ㉮ 펀드 브로커 甲 등의 요청에 따라 A사(코스닥상장) CB 50억원을 매도하여 동 매도대금으로 B사(미국법인) CB 440만달러를 인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이 집합투자기구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되는 지에 대한 내부적 투자판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